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99 호 2023. 4. 27.(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7[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8[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7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78회[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79회[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0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2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3회[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8회[2023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95회[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 모집공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99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08회[「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09회[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11회[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29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2회[「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3회[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4회[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01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35회[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104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36회[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4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37회[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9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38회[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3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42회[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19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16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관부서 등 지정)”을 “(총괄부서 등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하고, “구조례”를 “구 조례”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제5조 중 “사유발생일부터”를 “사유 발생일부터”로 하고,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5조)
  - (당초) 주관부서 → (변경) 총괄부서
- 나.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위원 비율 상향 조정(제4조제2항)
  - (당초) 2분의 1 → (변경) 3분의 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제6조, 제8조,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로 하고,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은”을 “인사위원회는”으로 하고,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자치법규명을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 → 제1조의3제1호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제3조,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확인·검토”를 “확인·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

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중 항공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u>법 제2조제4호</u> 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중 위성영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u>1.5m</u>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 <u>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u>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신청자	기관명		부서명		
	기관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직위(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정(담당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	(인)
	부(담당)	직위 (직급)		성명	(인)
신청자료	공간정보의 종류				
	신청지역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보안및관리 대책					
외주사업시 자료관리기관			담당자	(인)	
			전화번호		
<p>「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날인)</p> <p>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의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성영상 공개제한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의 해상도를 높이는 등 주민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성영상 공개기준 완화 (별표 1)

- 공개제한 위성영상의 해상도 완화 : 4m → 1.5m
- 위성영상 온라인 배포 시 보안처리대상 축소 :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나.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다.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제7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78호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m <sup>2</sup> )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023 -2호	울산복구청 건설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268-2번지 일원	1,300	'23. 04. 19. ~ '38. 04. 18.	태풍 피해로 인한 해안도로 보강공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7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23.4.21	제2023-2호	울산복구청 건설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268-2번지 일원	1,300	2023. 4.25.	2023. 7.30.	태풍 피해로 인한 해안도로 보강공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80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 935-233, 935-257, 935-13번지	하천의 명칭	○ 무룡천
점용 내용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점용 면적	○ 일시 37.8m <sup>2</sup> ○ 영구 4.62m <sup>2</sup>
점용 기간	○ 일시 : 2023. 4. 25. ~ 2023. 05. 24. ○ 영구 : 2023. 5. 25.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8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4. 25.
2. 점용·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749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52.2㎡ (계속) 4.54㎡
  - 나. 기 간 : (일시) 2023. 4. 25. ~ 2023. 5. 14. (계속) 2023. 5. 15.~ 2037.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법인명) :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8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매곡산업3길 13	매곡동 352-1	2023. 4. 2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4.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588호

## 2023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20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2년도 분)
2.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515,394원) 이하인 세대
3. 지원내용 : 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 ~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4.신청기간 : 2023. 4. 24. ~ 5. 23.

5.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복구청 도시과 (☎052-241-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595호

## 제5대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의회 모집공고

북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5대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의회 의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모집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의회
- 임 기 : 2023. 6. 20. ~ 2024. 6. 19.(1년)(2회 연임가능)
- 모집인원 : 30명
  - 미취학,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아동, 취약계층(사회적배려대상자, 다문화, 장애 등)
- 신청자격
  - 연 령 : 2005년 6월 이후 출생 아동
  - 거주지 :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또는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1. 선발 및 구성

- 선발방법 : 공개모집원칙, 기관추천 병행
  - ※ 추천기관의 범위 : 관내 학교, 강북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기관·단체, 장애인 기관·단체,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
  - ※ 지역별·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사 선발

## 1. 아동의회의 기능 및 운영

- 아동의회 운영계획
  - 정기회의(연 2회 이상), 임시회의(필요시), 분과위원회(월 1회)
- 주요 활동
  - 구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 아동의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월) 09:00 ~ 5. 26.(금) 18:00
- 신청방법
  - 이 메 일 : ehdrjf0621@korea.kr
  - 팩 스 : 052-241-7659
  - 방문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 4층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드림담당
  - ※ 관련서식은 울산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한글로 작성 후 서명 제출
-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 추 천 : 기관추천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5.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23. 6. 8.(목) 18:00이후
- 발표방법 : 개별통지
  - ※ 제5대 북구 아동의회 발대식 '6월 중순' 예정
  - 위촉장 수여, 아동의회 배지 수여, 오리엔테이션 등

## 6. 기타사항

- 의원의 해촉사유
  -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경우
  - 아동의원의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북구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드림 이동걸(☎ 052-241-7653)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원 지원신청서 1부.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원 추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및 촬영 등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원 추천서

아동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휴대폰 :		
비상연락처 (보호자)	관계 :	성명 :	연락처 :
아동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력	년 월 일	학력
추천기관 정보			
소속 (학교, 기관·단체명)		연락처	
추천자	직위 :	성명 :	
<p>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에 따라 아동의회 의원 공개모집에 위와 같이 위 아동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원으로 추천합니다.</p>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자기소개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단체명)		학년/반	
지원동기	인터넷, 학교 선생님 추천 등 어느경로를 통해 알게되었는지, 지원동기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글쓰기		
관심분야	정치, 문화, 예술, 놀이, 여가, 참여, 아동의 권리,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등 관심분야가 어떠한지 자유롭게 글쓰기		
자기소개	본인의 성격, 장단점, 취미, 특기 등을 자유롭게 글쓰기		
아동의회 활동계획	앞으로 아동의원으로 선정되면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글쓰기		

# 아동의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동의회 의원의 활동 신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주소, 학교명, 학년, 반
수집 및 이용 목적	아동의회에 대한 기록 및 홍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기만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 북구청에서 제공하는 아동의회 활동 및 자원봉사실적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홍보물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활동사진, 활동내용, 성명, 학교, 학년
수집 및 이용목적	아동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보유 및 이용기간	임기만료 시까지

- 위의 홍보물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보호자 성명, 연락처
수집 및 이용목적	아동의회 활동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기만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회 활동정보 안내 및 공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 .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59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임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  
(안 제3조의2)
-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안 제4조제1항)  
: (당초) 2배 → (변경) 5배
- 다.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 3.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1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41-7214, 팩스번호 : 052)241-7209

##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15일 미만”을 “월 15일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 금액”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를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u>월15일 미만</u>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 ----- ----- ----- ----- ----- 범위에서 ----- -.</p> <p>② ----- ----- ----- 월 15 일 미만----- ----- -----.</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p>
<p>② (생략)</p>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p>

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7. (생략)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 영 별표 2 -----  
-.

제4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 5배 -----  
금액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  
-----.

7. (현행과 같음)

8. ----- 해당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  
-----.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  
 -----  
 -----  
 -----

**[별표]**

**<삭 제>**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율로 지급한다.



## 관계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08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항)
- 나. 실적보고 규정 변경(안 제7조)

###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도계

2) 전화 : 052)241-8302 / 팩스 : 052)241-810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6. 기타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첨부물로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문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실적보고 등)”을“(활동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 실적을 관리해야 -----.

<삭 제>



## 현행규정

### □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2.3.31.>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2.3.31.>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2.3.3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⑤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609호

# 울산광역시 복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

#### 다.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 병역명문가와 가족에 대한 주요행사 초청, 위문격려, 사기 진작
-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라. 지원(안 제5조)

- 구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3. 관계법령

가. 「병역법」 제80조, 제82조

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중(예정)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 실시(예정)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병역법」

제80조(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



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울산광역시 복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안정총괄과 행정 6급 고태경(241-7221)

##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우리 시 현황 : 6개 중 5개 제정, 1개 미제정

구 분	제정현황	비 고
본청	○	복구 미제정
중구	○	
남구	○	
동구	○	
울주군	○	

□ 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체 243개 중 223개 제정, 20개 미제정

구 분	자치단체수	제정개수	제정현황
계	243	223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3개 자치단체 제정
서울특별시	26	25	광역시 : ○ / 기초 :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 제정
부산광역시	17	16	광역시 : ○ / 기초 : 16개 구·군 중 15개 구 제정
대구광역시	9	9	광역시 : ○ / 기초 : 8개 구·군 중 8개 구·군 제정
인천광역시	11	8	광역시 : ○ / 기초 : 10개 자치구 중 7개 구 제정
광주광역시	6	6	광역시 : ○ / 기초 : 5개 자치구 중 5 구 제정
대전광역시	6	6	광역시 : ○ / 기초 : 5개 자치구 중 5개 구 제정
울산광역시	6	5	광역시 : ○ / 기초 : 5개 자치구 중 4개 구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1	1	광역시 : ○
경기도	32	32	광역시 : ○ / 기초 : 31개 시·군 중 31개 시·군 제정
강원도	19	19	광역시 : ○ / 기초 : 18개 시·군 중 18개 시·군 제정
충청북도	12	12	광역시 : ○ / 기초 : 11개 시·군 중 11개 시·군 제정
충청남도	16	16	광역시 : ○ / 기초 : 15개 시·군 중 15개 시·군 제정
전라북도	15	14	광역시 : ○ / 기초 :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 제정
전라남도	23	17	광역시 : ○ / 기초 :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 제정
경상북도	24	17	광역시 : ○ / 기초 : 23개 시·군 중 16 시·군 제정
경상남도	19	19	광역시 : ○ / 기초 : 18개 시·군 중 18개 시·군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1	1	광역시 : ○

## 참고 2

## 우리 시 경감항목 및 경감율

## □ 우리 시 경감항목 및 경감율

번호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	경감항목	경감율
1	본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20-12-03	관람료	면제
2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21-09-24	이용료, 관람료	100분의 30
3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022-12-01	울산대공원 입장료	100분의 20
4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2020-07-06	수강료	100분의 30
				입장료	100분의 20
5	"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1-09-27	수강료	100분의 20
6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12-30	이용료	100분의 50
7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2-04-18	주차요금	100분의 50
8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04-02	사용료	100분의 50
9	"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04-02	주차요금	100분의 50

※ 동구, 울주군 경감항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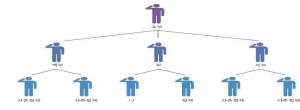
**참고 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개(부산울산지방병무청)****병역명문가 선양사업**

&lt; 부산울산지방병무청 &gt;

**□ 배 경**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업추진('04)
- 1대~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표창, 명예심제고, 국공립 등 시설이용료 우대)

(1代) 조부  
(2代) 부·백부·숙부  
(3代) 본인·형제·사촌형제

**□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 전국현황 ('04~'22년) : 총 9,447가문, 47,650명
- 울산지역 병역명문가 선정 : 127가문 661명
  - \* (가문) 남구 37, 울주군 35, 중구 22, 북구 21, 동구 12
  - 울산북구 총 21가문/99명 선정, '20년부터 가문수 및 인원 증가 추세
  - \* ('06~'16) 5/19, ('17) 2/10, ('19) 1/4, ('20) 4/20, ('21) 3/13, ('22) 6/33

**□ 병역명문가 명예 제고**

- '병역명문가 시상식'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매년 실시, 국무총리 참석
  -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등 20가문 표창 ('22년 기준)
- 국·공립/지방자치단체/민간 시설 시설이용료 감면, 면제 등 우대사업
- 병역명문가 패, 문패, 증서 등 수여 \* 우대기관 이용 시 병역명문가증 제시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울산북구 협조 요청사항**

- 명문가 지원을 위한 '울산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요청
  - 병역명문가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할인
  - \* 전국 광역단체 17곳 모두 제정 /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01곳 제정
- 울산북구 주요 축제 및 행사에 명문가 초청 등 예우 협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61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정이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 및 국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 라. 지원기준(안 제9조)

#### 3. 근거법령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 나. 「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
-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2, 팩스번호: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복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제정이유

-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 및 국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 라. 지원기준(안 제9조)

## 3. 관계법령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 나. 「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
-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 27.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 실시(예정)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2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사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안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 (안 제4조)
- 다.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1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32,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 1. 개정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사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안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 (안 제4조)
- 다.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중
-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5.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lt;단서 삭제&gt;</p> <p>6. <u>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u></p>
<p>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략)</p> <p>② 생활민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p> <p>1. ~ 3. (생략)</p> <p>4. <u>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u></p> <p>5. <u>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u></p> <p>6. <u>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 치기</u></p>	<p>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  
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8. (생 략)

<삭 제>

8.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632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용어 정비(안 제2조)

- (개정)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체육센터” ⇒ “체육센터”

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정비(안 별표 2)

- (추가)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 사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20:00
  - 휴 무 일 : 현재 운영중인 관내 공공체육센터와 동일

다. 체육시설의 사용료(안 별표3)

- (추가) 실내 다목적 마니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농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테니스(스크린) : 20,000원/시간(12,000원/30분)
- 테니스(블머신) : 18,000원/시간(10,000원/30분)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42, 팩스번호 : 052)241-733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  
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오도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를 “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를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2의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 [별표 2]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임대매장의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함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3. 체육시설 사용료

##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차. 그 밖의 사항

-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타.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대조명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연장	1회	5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운영에</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u>오토밸리 복지센터 · 국민체육센터 · 쇠부리체육센터 · 호계문화체육센터 · 운동장 · 배드민턴장 · 족구장 · 궁도장 · 정구장 · 다목적미니구장 · 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u>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1 . ----- ----- - - - - - <u>체 육 센터</u> ----- ----- ----- ----- ----- -----.</p>
<p>2. “<u>오토밸리 복지센터</u>”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u>수영장 · 헬스장 · 체육관 · 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음식점 · 뷔페 · 슈퍼마켓 · 운동용품 판매점 등을</u>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lt;삭 제&gt;</p>
<p>2의2. “<u>국민체육센터</u>”란 구에서 <u>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 ·</u></p>	<p>&lt;삭 제&gt;</p>

헬스장·체육관·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 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3. · 4. (생략)
-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6. (생략)

<삭 제>

<삭 제>

- 3. · 4. (현행과 같음)
- 5. ----- 7세 이상 12세 이하 -----  
-----.
- 6. (현행과 같음)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생략)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생략)

11. 가임여성이란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생략)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7. ----- 19세 이상 64세 이하 -----.

8. (현행과 같음)

9.----- 65세 -----.

10. (현행과 같음)

11. ----- 12세 이상 55세 이하 -----.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u>송정복합문화센터</u> <u>체육시설</u>	<u>화산로 89</u> <u>(화봉동 1484-2)</u>	<u>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u> <u>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u>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신 설>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북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1. 임대매장의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함
-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1. 임대매장의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함
-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현 행

개 정 안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차. 그 밖의 사항

-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차. 그 밖의 사항

-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평 일</th> <th>토·일·공휴일</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실내 다목적 미니구장</td> <td>10,000원/시간</td> <td>13,000원/시간</td> <td></td> </tr> <tr> <td>농구장</td> <td>10,000원/시간</td> <td>13,000원/시간</td> <td></td> </tr> <tr> <td>테니스(스크린)</td> <td>20,000원/시간 (12,000원/30분)</td> <td>20,000원/시간 (12,000원/30분)</td> <td>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td> </tr> <tr> <td>테니스(볼머신)</td> <td>18,000원/시간 (10,000원/30분)</td> <td>18,000원/시간 (10,000원/30분)</td> <td>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td> </tr> </tbody> </table>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현 행

개 정 안

카.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타.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633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신설(안 제2조)

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위촉) 방법 추가(안 제2조)

-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활용하여 위촉 가능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법령조문 변경(안 제5조)

- (당초) 영 제107조제5항 → (변경) 영 제107조제6항

####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회계과
- 2) 전화번호 : 052-241-7305

3) 팩스번호 : 052-241-868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로,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 위원 of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

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영 제107조제5항”을 “영 제107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을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u>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u></p>	<p><u>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u> -----  <u>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u> -----          -----          -----          -----          -----          -----          -----</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민간위원</u> -----          -----          ③ -----          -----          -----          -----          -----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u>-----          -----</p>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 단 신설>

<신 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생 략)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 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 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 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 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 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 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임 기만료 전이라도 -----  
-----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영 제107 조제6항-----  
-----  
-----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해당 분야 -----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수당 등) ① (생략)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  
-----.

제14조(운영세칙) -----  
-----

-----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

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략)

[붙임 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634호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 5. 공고기간 : 2023. 4. 26. ~ 5. 16. (20일간)

###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수 량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최초설치 : 어물동 1240-5, 오치골 1길 16-1)</p>	이동식 2대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35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라.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마.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3. 근거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 라.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 마.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 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3. 관계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중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다만, 해당 국·소의 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

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

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 12.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3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안 제2조)
- 다.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안 제4조)
-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안 제5조)
- 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안 제6조)
- 사.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안 제7조)

### 3. 근거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나.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4. 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b>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b>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제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 10px 0;">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안 제2조)
- 다.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안 제4조)
-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안 제5조)
- 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안 제6조)
- 사.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안 제7조)

## 3. 관계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나.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2023. 4월중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중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2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구 분		업무와 역할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구 분	업무와 역할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구 분	업무와 역할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 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수산과 농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일자리과 - - 경제일자리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 교통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도로터널 사고</li> <li>4. 육상화물운송 사고</li> <li>5. 도시철도 사고</li> <li>6. 항공기 사고</li> <li>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li> <li>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li> </ol>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해양수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li> <li>2. 조수(潮水)</li> <li>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li> <li>4. 해양 선박 사고</li> </ol>	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li> <li>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li> </ol>	안전총괄과 -
소방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위험물 사고</li> <li>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li> </ol>	장소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불</li> <li>2. 산사태</li> </ol>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농수산과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보건행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복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장소별: 고압가스(경제일자리과), 기업체 화재(경제일자리과), 유해화학물 누출·폭발화재(환경위생과), 공동주택 화재(건축주택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 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4명)	· 재난상황관리반 4명 - 안전총괄과 직원 4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9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9명)	· 재난상황관리반 9명 - 안전총괄과 직원 8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피해접수팀: 재난 주관부서 인력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중 일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2+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11명)	· 재난상황관리반 11명 - 안전총괄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피해접수팀: 재난 주관부서 인력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중 일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안전총괄과 직원 3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7+a+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6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 안전총괄과 직원 5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피해접수팀: 재난 주관부서 인력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중 일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a+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8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8명)	· 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총괄과 직원 7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피해접수팀: 재난 주관부서 인력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중 일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폭염(가뭄) 시 편성기준(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2명)	· 재난상황관리반 2명 - 안전총괄과 2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한파 시 편성기준(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a명	
	반 장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2명)	· 재난상황관리반 2명 - 안전총괄과 2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α+β+γ명	
	반 장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1)재난상황 총괄반 (8명)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 안전총괄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약팀(5명)	· 안전총괄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미디어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일자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정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 및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폭염	1) 비상 3단계	폭염으로 인하여 관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한파	1) 비상 3단계	한파로 인하여 관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



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다만, 해당 국·소의 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

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37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조)
-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 3.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조)
-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 중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제6조제1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관리기금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 주사가”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u>법정적립액</u>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u>최저적립액</u>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u>최저적립액</u>-----  -----  -----  -----  -----  -----  -----  -----  -----  -----</p>
<p>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구금고</u>에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  -----  ----- <u>구금고</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 <u>따라</u>  ----- <u>조례로 정하는</u> -----.</p>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카. (생략)

<신설>

파. (생략)

2. (생략)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1 .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  
-----  
-----  
-----.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  
-----  
-----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

- 1.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2. ----- 재난관리기금업무  
-----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  
-----.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재난업무 담당 국장 -----  
----- 사람 중 -----  
-----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따른다.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  
----- 사람

3. (현행과 같음)

③ -----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이 -.

④ -----  
-----  
-----  
----- 남은 기간-----.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38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 다. 기금의 용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용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 3. 근거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제113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 다. 기금의 용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용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 3. 관계법령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제113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 중
-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를“(기금의 확보 및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결산후 1월 이내”를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복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으로 한다.

제5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통지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를 “3퍼센트”로, 같은 호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전이라도”를 “상환기간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채무자”를 “구청장은 채무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연장하여 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를 각각 “구 금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u>」 ----- ----- ----- ----- -----</p>
<p>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복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p>	<p>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p>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용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용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용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  
-----.

제5조(기금의 용자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사람은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



제6조(용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1. (생략)
2. 용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제6조(용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  
-----.

1. (현행과 같음)
2. ----- 3퍼센트  
-----  
----- .  
----- 사람  
-----  
----- 구 금고  
-----  
-----.

제7조(용자금의 상환)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① ----- 각 호의 어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  
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  
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  
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  
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하  
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  
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의하  
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느 하나----- 상환기간 전이라도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 그 밖에 -----  
-----  
-----  
----- 연  
장할 -----.

② 제1항에 따라 -----  
-----  
-----  
----- 30일 전까지 -----  
-----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상환기  
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  
-----.

제9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  
-----  
-----  
----- 구 금고-----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

② 구금고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 금고-----  
-----  
-----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삭 제>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  
-----  
----- 각 호 -----  
-----  
-----.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원)	총입대금액	본인부담금	구용자금			
융자신청액	금 (₩ )	융자희망일	담보능력				
융자기간	상환만기일						
<p>「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 (인)</p> <p>보증인 주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p> <p>보증인 주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p> <p><b>울산광역시복구청장 귀하</b></p>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원)	총입대금액	본인부담금	구용자금			
융자신청액	금 (₩ )	융자희망일	담보능력				
융자기간	상환만기일						
<p>「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 (인)</p> <p>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p> <p>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p> <p><b>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b></p>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수수료 없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재 정 보 증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신청인이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용자를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신청인이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용자를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

1. 용자대상

1. 용자대상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재난 위험 시설	시설명					
	위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재난 위험 시설	시설명					
	위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		

2. 지원내용

2. 지원내용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용자 신청액	용자 결정액	용자조건		상환 조건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기간	이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년)	연리: %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용자 신청액	용자 결정액	용자조건		상환 조건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기간	이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년)	연리: %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용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퍼센트로 한다.  
 2. 용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2. 용자금 내역
  - 사업구분 :
  - 용자금액 :
  - 상 환 액 :
  - 상환차액 :

- 2. 용자금 내역
  - 사업구분 :
  - 용자금액 :
  - 상 환 액 :
  - 상환차액 :

3. 상환기한 :

3. 상환기한 :

4. 연장기간 :

4. 연장기간 :

5. 연장사유 :

5. 연장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인)

위 신청인 성명 : (인)

울산광역시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642호

##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2023. 6. 9.(금)**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구 분	면허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	면적 (ha)	수면위치	승인조건
재개발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방어외 5종	15.9506	정자동 지선	조건부 승인

#### 2. 승인조건

가. 어업면허 처분 시 수산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어업면허를 처분하지 아니 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2) 어장 간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 3) 개발되는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 양식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이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상은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물에 한함

5)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 신청기간 : 2023. 4. 27. ~ 6. 9.

4.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5. 제출서류

가. 어업·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 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 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라.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